

부수업무 신고서

문서번호 : 엑스포넬 2025-34

2025. 11. 19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사본수신 :

제 목 : 부수업무 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부수업무의 내용

가. 부수업무명: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업무 인재 양성 관련 교육 지원 및 관리업무

가. 목적 및 내용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 주관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에서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이스트소프트(주)와 강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본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함

나. 개시예정일자 및 영위장소

- 개시예정일자: 2025년 11월 18일(화)
- 영 위 장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

다. 영위방법

강위위탁계약서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영위

- 1) 교육과정 콘텐츠 제작, 교육시간에 맞는 강사 배정 및 강의
교육방법 : 오프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 2) 기타 : 강의에 필요한 교재/교안 제공, 난이도에 맞는 과제 및 시험 출제, 프로젝트 관리, 팀별 학습관리, 스터디 그룹 활동 관리 등

라.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수행조직
당사내 리서치 담당 이사가 소속된 운용팀에서 업무수행
- 수행인력: 3인 / (김태선 대표, 정재우 이사, 김준수 이사)

- 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 프리랜서 강사(최대 5명)와 업무제휴 체결 예정

2. 부수업무의 영향분석

가. 금융투자업과의 관련성

- 관련 교육은 AI퀀트(금융, 인공지능) 분야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금융도메인 업무지식 및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금융투자업의 부수된 업무 영역으로 연관성이 있음

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본건 부수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당사는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바, 영업수익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제고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관련 투자자 보호조치(투자자와 관련 있는 경우)

- 본 부수업무는 투자자와는 관련이 전혀 없으며 부수업무 영위시 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투자종목 추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혹시라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임

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금융투자업에 전문성을 지닌 집합투자업자가 상기 부수업무에 참여함으로써 AI퀀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지도를 통한 차세대 금융인재 양성을 통하여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첨부서류

- 당해 부수업무가 법 제41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엑스포넨셜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태 선 (印)



본점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7층, 710A호
작 성 자	준법감시인 김지영
전 화 번 호	(02)-6958-6502

준법감시인 검토의견

1. 검토대상

- 엑스포넨셜자산운용(주)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플랫폼을 통한 강의 콘텐츠 제작 및 강의를 부수업무로 영위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각호의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2. 관련법령

-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2항 각호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저해 여부

- 수익성 개선: 당사가 부수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現 보유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수업무를 수행할 계획인 바, 별도의 추가적인 인건비 등 비용증가 없이 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영업수익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영업수익 제고를 통해 이익잉여금이 증가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正의 효과가 기대되며, 자기자본의 증가는 NCR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상기 각 평가요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수업무 영위를 통해 당사의 경영건전성이 저해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

4.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해당 부수업무의 영위는 투자자(펀드의 수익자)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

5. 금융시장 안전성 저해 여부

- 해당 부수업무의 영위는 금융투자업자에 기인한 금융시장 안전성 저해 요인 이 없는 것으로 판단

6. 종합 검토의견

- 상기 각 검토내역과 같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엑스포넨셜자산운용(주)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플랫폼을 통한 강의 콘텐츠 제작 및 강의를 부수업무로 영위함에 있어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2)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3) 금융시장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엑스포넨셜자산운용 준법감시인 김 지 영